

서 약 서

신고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배우자 성명*: (서명 또는 인)

* 신고인과 부동산 취득명의인 다를 경우 기재

상기인은 현재 해외이주자가 아닌 자로서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나 동 해외 체재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에 부득이 본 서약서를 제출하오며, 해외 주거용 주택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. 상기인이 서약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분의 제재를 받겠습니다.

20 . . .



개인의 외국주택 취득 관련 안내

- 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주택을 취득한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-40조에 따라 아래의 보고서를 해당기한 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제출 보고서 목록>

보 고 서 명	제 출 기 한
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	부동산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 이내
해외부동산 처분(변경)보고서	부동산 처분(변경)후 3개월 이내 (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 수령시 수령 시점)
수시 보고서*	매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서류

*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

- ☐ 사후 보고서의 제출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, 신고인의 주소(해외체재주소 포함), 전화번호, 이메일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